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질병청에 신고하는 ‘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신고’ 서식에 감염인 정보 항목 신설
(안 제2조제2항제3조 신설)
- 나. 감염인 통지 및 역학조사,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연구 또는 혈액검사 시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정보를 발견 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하고자 함(별지 제1호의2서식)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를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(기 관 명)				
우 - 주소		/ 전화() -		팩스() -
(①부서명)		(②부서장 직위 및 이름)		(담당자 이름)
문서번호:				
시행일자:				
수 신:				
제 목: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신고				
감염인 정보	성별	♂남 ♀여	주소지 ^③	
	생년월일		국적	♂내국인 ♀외국인
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			④검사물번호	
연구 또는 검사일	년 월 일	군부대 단체 헌혈 여부	☐ 예 ☐ 아니오	
확인진단 방법			확인검사	[] () 보건환경연구원
확인진단일	년 월 일	기관	[] 질병관리청(국립보건연구원)	
⑤ 연구자 또는 검사자의 소속기관:				
⑥ 연구자 또는 검사자 이름: (⑦서명 또는 날인)				

작성요령

- ① 부서명, ② 부서장 직위 및 이름: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히 기록합니다.
- ③ 주소지는 시·도와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까지 기록
- ④ 검사물번호: "연도 - 지역번호 - 보건소(병원)월별 - 검체번호"순으로 기록합니다.
(예: "2020년, 서울, 중구 보건소 1월, 검체번호 1번"인 경우 "20-01-중구01-01"로 기록)
- ⑤ 연구자 또는 검사자의 소속기관, ⑥ 연구자 또는 검사자 이름: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히 기록합니다.
- ⑦ 서명 또는 날인: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.

신고방법에 관한 안내

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.

210mm × 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〈 입법안 소관 부서명 〉

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318